제　　정 : 1999. 3. 08.
1차개정 : 2000. 3. 18.
2차개정 : 2006. 9. 01.
3차개정 : 2009. 4. 08.
4차개정 : 2016. 4. 01.
5차개정 : 2019. 4. 12.
6차개정 : 2022. 2. 22.
7차개정 : 2024. 1. 31.

# 북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(신)

**북　일　고　등　학　교**

# 북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

제　　정 : 1999. 3. 08.
1차개정 : 2000. 3. 18.
2차개정 : 2006. 9. 01.
3차개정 : 2009. 4. 08.
4차개정 : 2016. 4. 01.
5차개정 : 2019. 4. 12.
6차개정 : 2022. 2. 22.
7차개정 : 2024. 1. 31.

## 제 1 장　총　　칙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초.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,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.운영에 관한조례, 북일학원정관 제6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북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.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북일학원 정관 제65조의2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 규정 및 회의규칙 개정
2.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3.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4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5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6.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7.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8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9.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11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12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3. 기타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4항, 제5항의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학교 홈페이지
2. 학부모 총회
3. 가정 통신문
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학생 설문조사
2. 총학생회(대의원회)
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## 제 2 장 위원의 신분

**제 3 조(임기)** **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** **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2024.1.31.개정)**

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**제 4 조(위원의 자격)**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**제 5 조(위원의 의무 등)** **①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** **②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. (2024.1.31.개정)**

**제 6 조(위원의 자격상실)** ①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당해 학년도 회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
②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
③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
④학부모위원이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## 제 3 장 위원의 선출

**제 7 조(위원의 정수)**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, 학교장을 포함한

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
**제 8 조(선출관리위원회)**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25일전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하며, 선출관리위원이 운영위원 입후보시에는 선출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홍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장, 교사 1명,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,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.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.

**제 9 조(학부모위원 선출)** ①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 하되, 직접투표를 할 수 없는 학부모는 우편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투표한다.

②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‘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’를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.

④(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단,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이내 일 때에는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를 배부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⑤(투표방법)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기표하며,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 송부 한다.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를 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· 봉인한다.

단,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투표방법 등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 후 학부모에게 충분하게 공지 한 후 실시한다.

⑥(당선자 결정)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다만, 개표결과 동점자로 인하여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.

⑦(무투표 당선)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같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사퇴.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학부모위원후보자가 학교운영위원 정수와 같게 된 때에는 학부모위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 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**제 10 조(교원위원 선출)** ①(선출 방법) 교원위원 선출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정수의 2배수의 범위 내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한다.
②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'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'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.
④(투표)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⑤(추천자 결정) 개표 결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위원정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한다.

**제 11 조(지역위원 선출)**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단, 추천인원이 위원 정수 내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선출하고 투표결과 동점자로 인하여 위원을 선출할 수 없을 경우 동점자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결정한다.

**제 12 조(선출일)**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**제 13 조(보궐선거)** 위원이 궐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

**제 14 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**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,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.
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 15 조(소위원회)**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 16 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**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,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의 명칭 및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
**제 17 조(사무처리 부서)**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, 행정실내에 전담직원을 두되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보직교사의 협력을 받는다.

## 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

**제 18 조(회기 등)**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 한다.
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.
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⑤회의는 개최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⑥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**제 19 조(의안의 제출·발의)**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

**제 20 조(의사·의결 정족수)**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 21 조(회의 공개 원칙)**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**제 22 조(서류제출 요구)**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

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**제 23 조(회의록 작성 등)**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24 조(건의사항 처리)**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여 심사한다.
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 25 조(공청회)**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.지역주민 또는 학식.경험이 있는 자 (이하 "진술인"이라 한다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.일시.장소.진술인.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**제 26 조(시정명령 신청)**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**제 27 조(운영경비)** **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북일고등학교 교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.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. (2024.1.31.개정)**

## 부 칙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 조치)**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제 2 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**제 3 조(최초의 회의소집)**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는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**제 4 조(최초의 규정)**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**.**

**제 5 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법인 정관이나 본교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**

## 부 칙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06.8.31운영위원회 의결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09.4.7운영위원회 의결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16.2.24운영위원회 의결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 2 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개정 2019.4.11.운영위원회 의결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2.2.22.운영위원회 의결)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개정 2024.1.30.운영위원회 의결)**

**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**